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합5760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유한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윤대웅, 이주헌, 유태용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09,447,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

2. 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2019. 9. 1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유한회사 D은 피고 C 주식회사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각 특허청 2019. 9. 19. 접수 같은 목록의 “접수번호”란 기재 각 해당번호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D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에게 1,155,199,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A(이하 ‘파산회사’라 한다)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3. 12.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들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대표자는 모두 E이다.

나. 1) 원고는 파산회사의 상품, 상표권, 비품 일체에 관한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2019. 6. 13. 최고가로 응찰한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2] 표 기재 각 보관장소(매장, 창고)를 포함한 30개 보관장소에 있던 상품 및 비품,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94개의 상표권에 관하여 자산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아래 표에서 원고는 “갑”으로, 피고 C는 “을”로 각 칭한다).

[표 1]

제1조[매매대상 자산]

2. “을”은 전항 기재 자산을 계약일의 현상대로 양수하며, 그 상태, 수량, 권리의 하자 등 매매대상 자산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부제소 합의).

제2조[매매대금]

“을”은 “갑”에게 제1조의 자산을 매수하는 대가로 22억 1,30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자산의 인도]

“갑”은 “을”이 제2조의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할 경우 “을”에게 자산의 보관장소를 인도하거나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자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을”의 책임과 의무]

1.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매매목적물의 인수, 폐기, 보관 및 권리이전 등에 따르는 일체의 책임, 위험 및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매매대상 자산을 인수함에 있어서 그 보관장소를 임대한 자의 확인을 받는 등 적절한 절차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특약사항]

“을”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매매대상 자산을 “갑”이 보관한 각 장소에서 전부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경과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각 보관장소에 대하여 지체일수로 산정한 임료[자체매장(신갈점, 남양주점)의 경우, 1일당 1천만 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2) 원고는 2019. 6. 14. 서울회생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14.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서를 작성하였으나 입찰서 접수시간 경과를 이유로 응찰이 무효처리되었던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이 서울회생법원에 매각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후 2019. 7.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서를 송달하였다.

다. 1) 원고는 2019. 9. 17. 피고 C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2019. 7. 2.)로부터 2주간 내에(2019. 7. 16.까지) 매매대상 자산을 보관장소에서 전부 반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9. 9. 16.까지 발생한 손해금 1,066,643,212원을 2019. 9. 23.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C에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9. 11. 13. 피고 C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피고 C가 위 반출기한까지 매매대상 자산을 보관장소에서 전부 반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별지 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위 반출기한 다음 날인 2019. 7. 17.부터 각 반출일까지의 지체일수로 산정한 임료 상당 손해액 합계 1,155,199,879원을 2019. 11. 15.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C에 도달하였다.

라. 1)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대상 상표권 중 일부인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2019. 7. 24.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2) 피고 C는 2019. 9. 19.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D에 이 사건 상표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 상표권 전부를 5,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상표권양도계약 중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상표권양도계약’이라 한다).

3) 피고 D는 2019. 9. 19. 피고 C에 위 상표권 양도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상표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라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을 서울회생법원의 이 사건 매매계약 허가일인 2019. 7. 2.부터 2주 내인 2019. 7. 16.까지 모두 반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으므로 약정금으로 [별지 2] 표의 “월차임”란 기재 각 금액 및 같은 표의 “반출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지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료 상당액 합계 1,155,199,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9. 7. 2.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매매대상 자산을 원고가 보관한 각 장소에서 전부 반출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경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원고에게 각 보관장소에 대하여 지체일수로 산정한 임료[자체매장(신갈점, 남양주점)의 경우 1일당 1,000만 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대상 자산의 각 보관장소를 인도받은 후 그중 [별지 2] 표의 “보관장소”란 기재 각 매장 또는 창고에서 같은 표의 “반출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매매대상 자산을 전부 반출한 사실, [별지 2] 표의 “보관장소”란 기재 각 매장 또는 창고의 월차임이 같은 표의 “월차임”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 약정금으로, [별지 2] 표의 “월차임”란 기재 각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차임인 같은 표의 “일차임”란 기재 각 금액¹⁾ 및 같은 표의 “반출일”란 기재 각 해당일을 기준으로 한 지체일수인 같은 표의 “지체일수”란 기재 각 일수²⁾를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 2] 표의 “약정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³⁾ 합계 1,147,944,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는 파산회사의 자체매장인 신갈점의 경우 매장의 일부만, 남양주점의 경우 2층만 각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위 각 매장의 차임 상당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C는 행담도점, 진접점의 임대인과 각 매장의 점유 이전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오산점의 임대인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50%만 지급하기로, 양지점의 임대인과 반출 지연기간 차임을 2,000만 원으로 각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임대인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차임 상당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에 포함된 상표권 중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속기간 만료로 이미 소멸된 상표권 1개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제3자의 상표권등록취소심판청구에 따라 무효가 된 상표권 8개가 있다. 위 9개의 상표권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9개의 상표권 가치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거나 민법상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인 상품권 94개를 5,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무효인 상품권 9개의 가치는 4,787,234원(= 5,000만 원 × 9/94)이라 할 것이고, 피고 C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약정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약정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바, 원고가 유리한 위치에서 피고 C에 불리한 매매계약 체결을 강제한 점,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이 대규모이고 서울회생법원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 중 재고의류에 대한 판매 최적기를 놓치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의 반출 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사용면적, 임대인과의 차임 면제 내지 감액 합의에 따라 원고가 실제 부담한 임료 내지 손해액과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에 포함된 상표권 중 일부가 소멸 또는 무효로 되거나 원고가 피고 C 앞으로 권리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지출의무가 없는 임료 상당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파산회사의 자체매장에 관하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C가 남양주점의 경우 전체 면적 약 1,800평 중 700평만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자체매장인 신갈점과 남양주점의 경우 지체일수 1일당 1,000만 원으로 산정한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매장의 실사용 면적에 따라 임료 상당 손해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파산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남양주점 전체 면적을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1일당 임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신갈점의 경우 피고 C가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파산회사의 자체매장에 관하여 원고의 손해가 일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한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담도점, 진접점, 오산점, 양지점에 관하여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9. 7. 24. 행담도점의 임대인인 I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C가 2019. 7. 29.까지 행담도점에서 매매대상 자산을 수거(반출)하는 조건으로 I 주식회사가 피고 C에게 매매대상 자산 수거(반출)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진접점의 임대인인 J이 피고 C로부터 진접점 매장을 인도받고 피고 C에게 추가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일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건물인도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오산점의 임대인 측과 피고 C 측이 명도 지연에 따른 임대료를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된 사실, 양지점의 임대인인 K 주식회사 측이 피고 C 측에게 명도 지연에 따른 임대료를 최소한도 2,000만 원(2019. 7. 19.부터 2019. 8. 13.까지 임대료 55,354,840원 중 약 37%)으로 산정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매장의 임차인은 파산회사 내지 원고로서 피고 C가 위 각 매장의 임대인들과 명도 지연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대한 면제 혹은 감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회사 내지 원고에 대하여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파산회사 내지 원고가 피고 C와 위 각 매장의 임대인과의 합의 내지

협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위 각 매장의 임대료를 면제 내지 감액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매장에 관하여 원고의 손해가 일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에 관한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 2]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상 상표권 중 1개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속기간(2018. 11. 20.) 만료로 소멸한 사실, 아래 [표 2]의 순번 제2 내지 9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매매대상 상표권 중 8개가 등록취소심결 확정으로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표 2]

순번	등록번호	상표명	소멸원인	소멸일
1	L	M	존속기간 만료 (만료일 2018. 11. 20.)	2018. 11. 21.
2	N	O	등록취소심결 확정 (확정일 2020. 3. 7.)	2019. 10. 28. (심판청구일)
3	P	Q	등록취소심결 확정 (확정일 2020. 5. 19.)	2019. 10. 11. (심판청구일)

4	R	S	등록취소심결 확정 (확정일 2020. 3. 6.)	2019. 10. 28. (심판청구일)
5	T	U	등록취소심결 확정 (확정일 2020. 3. 26.)	2019. 11. 21. (심판청구일)
6	V	W	등록취소심결 확정 (확정일 2020. 4. 7.)	2019. 10. 11. (심판청구일)
7	X	S	등록취소심결 확정 (확정일 2020. 3. 26.)	2019. 11. 21. (심판청구일)
8	Y	U	등록취소심결 확정 (확정일 2020. 3. 26.)	2019. 11. 21. (심판청구일)
9	Z	AA	등록취소심결 확정 (확정일 2020. 5. 14.)	2019. 10. 11. (심판청구일)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파산회사가 가진 상품, 비품 및 상표권 일체에 관하여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매각대상을 공고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 제2항에서 피고 C는 매매대상 자산을 계약일의 현상대로 양수하고 그 상태, 수량, 권리의 하자 등 매매대상 자산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한 점, 피고 C 역시 위 9개의 상표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인 상표권 94개를 모두 피고 D에 양도한 점,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표 2]의 순번 1 기재 상표권의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멸등록이 이미 완료되어 매수인인 피고 C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표 2]의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상표권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C가 이를 피고 D에 양도한 이후에 제3자가 각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인 점(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에 의하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9개의 상표권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거나 원고가 이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매매대상 자산을 각 보관장소에서 전부 반출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경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원고에게 각 보관장소에 대하여 지체일수로 산정한 임료[자체매장(신갈점, 남양주점)의 경우 1일당 1,000만 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약정의 문언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전체 내용 및 체계, 그로부터 추단되는 위 약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은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의 반출지연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 중 상품 및 비품이 30곳의 매장 등에 분산되어 있고 각 매장 등에 보관된 상품 및 비품의 수량이 상당한 점, 원고와 피고 C는 2019. 6.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원고가 바로 그 다음 날인 2019. 6. 14. 서울회생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 역시 같은 날 허가서를 작성하였으나 제3자의 의견서 제출로 서울회생법원이 2019. 7. 2.에야 허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이 지연된 점, 이에 따라 피고 C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세운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의 반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 중 상품의 대부분이 의류이어서 판매시기에 따라 판매량에 변동성이 크고 이는 반출 소요기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점, 자체매장인 신갈점과 남양주점의 경우 시세 및 사용면적에 의한 객관적인 차임이 아닌 지체일수 1일당 1,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였고 이는 임차매장인 다른 매장의 월차임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고액인 점, 피고 C가 일부 임차매장의 임대인들과 반출 지연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관하여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해 합의하거나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원고가 임차매장의 임대인들로부터 피고 C가 반출을 지연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실제로 면제 또는 감액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원고가 피고 C에 자산의 보관장소를 인도하거나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자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19. 7. 9.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인 상표권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인 상표권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아직 권리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사정은 감액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위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자체매장인 신갈점과 남양주점의 경우 1일당 임료를 50% 감액하여 1일당 500만 원으로(임차매장은 약정 월차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차임으로), 반출기한은 2019. 7. 16.에서 2주 더 연장하여 2019. 7. 30.까지로 한 지체일수([별지 2] 표의 “지체일수”란 기재 각 해당일수에서 14일을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 2] 표의 “인정금액”란의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약정손해액을 감액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반출지연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 약정금으로 [별지 2] 표의 “인정금액”란의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609,447,6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 C의 최종 반출일 다음 날인 2019. 10. 17.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약정금(손해배상예정액)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표권양도계약일인 2019. 9. 19. 이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C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C의 2019. 9. 30.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피고 C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상품의 원가를 반영할 경우 자본총계(= 자산총계 - 부채총계)가 (-)45,578,134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 5,371,746,473원 - 재고자산 상품의 원가 18억 6,190만 원) - 재무상태표의 부채총계 3,555,424,606원]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약정금 채무는 위 재무상태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C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 중 상표권 94개의 가치 상당액 5,000만 원을 위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위 재무상태표의 부채에 추가로 반영할 경우 피고 C의 자본잠식 상태는 더욱 심화되는 점, 피고 C의 2019.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총계가 147,098,970원(= 자산총계 2,374,420,300원 - 부채총계 2,227,321,330원)이나 위 표준대차대조표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약정금 채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는 2019. 12. 31.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피고 C의 위 재무상태표 및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재고자산 중 상품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 C의 자산의 실제 가치가 위 재무상태표 및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 C가 지급여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의 보관장소 임대인들에게 반출 지연기간 동안의 임료 감액 협의를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상표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C가 피고 D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이 사건 상표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D에 이 사건 상표권을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가 2019. 9. 1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직후에 그 대표자가 동일한 피고 D와 이 사건 상표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행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상표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D은 채무자인 피고 C에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위 1.의 라. 3)항 기재와 같이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석, 판사 김현희, 판사 강석규

[별지 1]

목
록

번호	출원(국제등록)번호	등록번호	점수 연월일	점수번호	상품분류	상표의 명칭
1			2019.9.19	2019-0640661	16	
2			2019.9.19	2019-0640661	24	
3			2019.9.19	2019-0640661	03	
4			2019.9.19	2019-0640661	09	
5			2019.9.19	2019-0640663	35	
6			2019.9.19	2019-0640661	24	
7			2019.9.19	2019-0640661	18	
8			2019.9.19	2019-0640661	06	
9			2019.9.19	2019-0640661	20	
10			2019.9.19	2019-0640663	35	
11			2019.9.19	2019-0640661	20	
12			2019.9.19	2019-0640661	06	
13			2019.9.19	2019-0640663	35	
14			2019.9.19	2019-0640661	18	
15			2019.9.19	2019-0640661	03	
16			2019.9.19	2019-0640661	21	
17			2019.9.19	2019-0640661	28	
18			2019.9.19	2019-0640661	09	
19			2019.9.19	2019-0640661	21	
20			2019.9.19	2019-0640663	43	
21			2019.9.19	2019-0640661	28	
22			2019.9.19	2019-0640661	06	
23			2019.9.19	2019-0640663	35	
24			2019.9.19	2019-0640661	28	
25			2019.9.19	2019-0640661	16	
26			2019.9.19	2019-0640664	25 35	

[별지 2]

표

순번	보관장소	원차입	입차입	반출일	지체 일수	정구금액	약정손해액	인정금액		
								입차입	지체일수	손해액
1	산감점	10,000,000 (1일당)	10,000,000	2019. 8. 2.	17	170,000,000	170,000,000	5,000,000	3	15,000,000
2	남양주점	10,000,000 (1일당)	10,000,000	2019. 8. 6.	21	210,000,000	210,000,000	5,000,000	7	35,000,000
3	양지점	60,000,000	1,972,602	2019. 8. 14.	29	58,000,000	57,205,458	1,972,602	15	29,589,030
4	양주점	28,000,000	920,547	2019. 7. 25.	9	8,400,000	8,284,923	920,547	0	0
5	여주점	15,000,000	493,150	2019. 8. 14	29	14,500,000	14,301,350	493,150	15	7,397,250
6	대전점	30,000,000	986,301	2019. 7. 16	0	0	0	986,301	0	0
7	포항점	44,000,000	1,446,575	2019. 8. 27.	42	61,600,000	60,756,150	1,446,575	28	40,504,100
8	발산점	32,000,000	1,052,054	2019. 8. 14.	29	29,935,484	30,509,566	1,052,054	15	15,780,810
9	안양점	25,000,000	821,917	2019. 9. 16	62	50,000,000	50,958,854	821,917	48	39,452,016
10	오산점	34,000,000	1,117,808	2019. 9. 16.	62	68,000,000	68,000,000	1,117,808	48	53,654,784
11	동탄점	35,000,000	1,150,684	2019. 7. 16.	0	0	0	1,150,684	0	0
12	전집점	16,000,000	526,027	2019. 9. 9.	55	29,333,333	28,931,485	526,027	41	21,567,107
13	금촌점	12,000,000	394,520	2019. 7. 16.	0	0	0	394,520	0	0
14	행남도점	25,475,000	837,534	2019. 7. 26.	10	8,491,667	8,375,340	837,534	0	0
15	악산점	9,000,000	295,890	2019. 7. 16.	0	0	0	295,890	0	0
16	선릉점	9,500,000	312,328	2019. 7. 22.	6	1,900,000	1,873,968	312,328	0	0
17	양재점	65,000,000	2,136,986	2019. 9. 26.	72	156,000,000	153,862,992	2,136,986	58	123,945,188
18	안산점	52,750,000	1,734,246	2019. 9. 26.	72	126,600,000	124,865,712	1,734,246	58	100,586,268
19	사리원점	22,727,273	747,198	2019. 8. 21.	36	27,272,728	26,899,128	747,198	22	16,438,356
20	남부점	31,180,000	1,025,095	2019. 10. 16	92	95,816,667	94,308,740	1,025,095	78	79,957,410
21	속산남구점	13,500,000	443,835	2019. 7. 19.	3	1,350,000	1,331,505	443,835	0	0
22	대청점	15,000,000	493,150	2019. 7. 9.	0	0	0	493,150	0	0
23		15,000,000	493,150	2019. 9. 30.	76	38,000,000	37,479,400	493,150	62	30,575,300
합계						1,155,199,879	1,147,944,571			609,447,619

- 1) [별지 2] 표의 “월차임”란 기재 각 금액 $\times$ 12개월 / 365일, 원 미만 버림
- 2) 서울회생법원의 이 사건 매매계약 허가일인 2019. 7. 2.부터 2주가 도과한 2019. 7. 17.부터
[별지 2] 표의 “반출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의 일수
- 3) [별지 2] 표의 오산점(순번 10)의 약정손해액은 69,304,096원(= 1,117,808원 $\times$ 62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8,000,000원으로 인정함